(3쪽 중 제3쪽) 작성방법 이 서식은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(이하 ‘해외부동산등’ 이라 함)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･보유･투자운용(임대 포함) 및 처분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당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, 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※ 해외부동산 취득･보유･투자운용(임대) 및 처분 명세서 제출대상 취득가액 자료 제출의무 취득 시 보유 시 투자운용(임대) 시 처분 시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× × × × ○ (처분 명세) 2억원 이상 ○ (취득 명세) ○ [보유 명세] ○ [투자운용(임대) 명세] ○ (처분 명세) ○ (처분 명세) 1. ⑥, ⑦, ㉒, ㉓, ㉖, ㉗, ㊳, ㊴: 부동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. 2. ⑬: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고(면적 단위는 ㎡로 통일), 공동취득자의 경우도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습니다. \* 1평 = 3.3058㎡, 1ft2 = 0.092903㎡, 1a = 100㎡ 3. ⑭: 공동취득자의 경우에 제출자의 소유지분 비율을 적습니다. 4. ⑮, ⑯, ⑰: 금액은 현지통화기준으로 적되, ( ) 안에 통화 단위를 적고, 원화환산금액을 취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적습니다. ※ 공동취득인 경우에도 총취득금액(국내송금액+현지조달금액)은 총액으로 적습니다. 5. ⑱~󰊊󰊓: 공동취득인 경우 각각 취득인의 인적 사항과 지분을 적습니다. 6. ㉛: 취득 이후 연도에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적습니다. 7. ㉜: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. 8. ㉝~㉟: 보증금, 월세, 연간 월세 합계는 현지통화를 ‘수입금액 획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’로 환산하여 원단위로 적습니다. 다만, 공동취득자의 경우에는 제출자의 소유지분(⑭)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 9. ㊱: 해외부동산 투자운용(임대) 관련 임대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(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)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종합소득세로 신고･납부 하여야 합니다. 10. ㊼: 해외부동산 처분관련 양도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2에 따른 거주자(거주자 중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)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･납부 하여야 합니다. 11. 붙임 서류: 부동산 매매계약서, 등기부 등본 등은 취득 후 최초로 제출하거나 처분할 때 제출하고,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